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11.26.(목) 10:00 배포 2026.11.25.(수) 20:00

건전성 규제, 금융 공급,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일회성이 아닌, 지속가능한 포용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.

- 이억원 금융위원장, 제8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주재 -

▲ **(현황)** 금융권이 **포용금융을 적극 추진**한 결과, **최근 시장금리 상승**에도 불구하고 **低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는 오히려 하락**하고, **잔액은 증가**

▲ **(건전성 규제)** 금융권의 포용금융을 제한하는 **건전성 규제를 합리화**

○ 업권별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·해석 등을 거쳐 **'27년 1분기 내 시행**

▲ **(공급) 은행**의 **낮은 조달비용**과 **저축은행**의 **중저신용자 심사역량**을 결합한 **'포용 온렌딩 대출'**을 통해 **중저신용자**에 **낮은 금리**의 신용대출을 공급

○ **기획형 규제샌드박스**를 통해 은행법 등 **규제특례**를 부여하고, **새희망홀씨 실적 인정 및 신보·기보·지신보 출연료 납부대상 제외** 등 **인센티브** 제공

▲ **(관리) 금융권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적**('26년 상반기) **최초 공시**(협회)

○ **'26년 상반기** 금융권은 ❶**소멸시효 완성 등 1.6조원**(35.5만건), ❷**자체 채무조정 13.9조원**(34.1만건), ❸**채권 매각 4.0조원**매각대금(92.7만건) 실시

○ 향후에도 **금융회사별 개인연체채권 관리 실적**을 **반기별로 투명하게 공개**하여 **채무자 보호와 재기지원** 중심의 **연체채권 관리**를 유도

1 회의 개요

2026.11.26.(목) 금융위원회는 **「제8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」**를 개최하였다. 오늘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❶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**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**, ❷은행-저축은행 **온렌딩 대출 추진방안** 및 ❸금융권 **개인 연체채권 관리실적 공시안**을 논의하였다.

■ (일시/장소) 11.26.(목) 10:00~11:10 / 은행연합회

■ (참석) (정 부) 금융위원장, 금융위 금융산업국장, 금융소비자국장, 금융감독원 부원장
(금융권) 은행연합회 전무, 생명보험협회 회장, 저축은행중앙회 회장, 여신금융협회 회장, 대부금융협회 회장, 신협중앙회 회장, 우리은행장
(금융산업분과 전문가) 남재현(국민대), 서은숙(상명대), 김석기(금융연구원), 김경진(KB은행), 김성수(카카오뱅크), 윤현영(신한저축은행)

■ (안건) ❶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(금융위·금감원)
❷ 은행-저축은행 협업 온렌딩 대출방안(우리은행)
❸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실적 공시안(금감원)

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

이억원 금융위원장은 '26.1월 **포용적 금융 대전환**을 시작한 이후 정부와 금융권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, **최근 금리가 상승**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▲**포용금융 공급은 역대 최고수준**으로, ▲저신용자의 **금리는 낮아지고 대출잔액은 증가**하고 있으며, ▲**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**도 지속 **확대**되고 있다고 **평가**하였다. 아울러, 이제는 포용금융의 **양적 확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시스템을 구축**하는 데에 **집중**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.

이를 위해 ▲**은행과 저축은행이 협업**하여 중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**'포용 온렌딩 대출'**의 출시를 지원하고, ▲**금융권의 연체채권 실적 공시** 등을 통해 **연체채권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**할 것을 강조하였다. 또한, ▲**포용금융 관련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**하는 등 **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**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.

3 안건 주요 논의내용

1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

금융권은 금융취약계층의 **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생활 안정 지원**을 위하여 **포용금융을 적극 추진**하고 있다. 그 결과, **최근 시장금리 상승**에도 불구하고 中-高신용자와 달리 **低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는 오히려 하락**하고, **잔액은 증가**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 최근 금융권 가계신용대출 공급현황 분석 결과(신용정보원) >

■ **시장금리 상승**으로 **中-高신용자 금리**(잔액기준)는 **상승**했으나, **低신용자 금리**는 **오히려 0.05%p**[은행]**~0.27%p**[저축은행] **하락**

- 특히 **잔액기준 금리가 하락**한 것으로서, **신규취급 금리의 하락 효과**가 **기존 대출**(변동금리 대출)의 **금리 상승효과를 상쇄**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

<신용도별·업권별 신용대출 금리변화>

구분(단위 : %)	低신용자			中신용자			高신용자		
	'26.3말	'26.7말	증감	'26.3말	'26.7말	증감	'26.3말	'26.7말	증감
은행	8.68	8.63	△0.05	5.82	5.99	+0.17	4.95	5.14	+0.19
상호금융	7.51	7.51	-	5.99	6.12	+0.13	5.58	5.74	+0.16
새마을	6.89	6.83	△0.06	6.00	6.02	+0.02	4.82	4.87	+0.05
보험	9.92	9.79	△0.13	8.62	8.63	+0.01	8.39	8.40	+0.01
여전(신용)	14.94	14.87	△0.07	13.20	13.21	+0.01	7.11	7.26	+0.15
여전(카드론)	15.30	15.12	△0.18	13.02	13.06	+0.04	11.10	11.11	+0.01
저축은행	15.34	15.07	△0.27	14.49	14.32	△0.17	5.91	5.80	△0.11
여전(현금서비스)	19.07	19.09	+0.02	18.19	18.23	+0.04	16.14	15.97	△0.17

■ 최근 **低신용자 신용대출 잔액**은 **증가**('26.3말 83.1조원→'26.7말 84.1조원, +1.0조원)하였으며, **低신용자의 잔액 증가율이 가장 높음**(低(+1.2%)-中(+0.0%)-高(△0.3%) 순)

이번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은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포용금융을 제한할 수 있는 금융권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이다.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'**포용금융추진단 건전성 규제 합리화반**'을 통해 금융권과 **건전성 규제 개선 필요 과제를 발굴·검토** 해왔다. 그 결과,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라는 건전성 규제의 기본적인 목적을 유지하되, 포용금융에 대한 금융권의 **유인이 축소되지 않고, 충분한 자본여력**을 바탕으로 **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**할 수 있도록 **총 9개 과제**의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다.

[❶ 포용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]

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'소진공') 보증부대출 등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(RW)를 기존 20%에서 0%로 합리화한다. 현재 공공기관 중 **정부**로부터 **제도적으로 결손보전**이 되는 기관 등의 경우 RW 0%를 적용할 수 있는데, **소진공**은 근거법상 **기관에 대한 결손보전 조항이 없어** RW 20%를

적용하고 있다. 이에 소진공 **소관 사업 재원의 대부분**을 차지하는 **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***에 대해 **정부 결손보전 의무**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**RW 0%**를 적용하고, **소진공 보증부대출**에 대한 은행권의 **자본부담을 합리화**한다.

* 소진공 사업의 대부분(90% 이상)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운영 〔※소진공 공시자료〕

②**신용리스크 RW 0%가 적용되는 공공기관***은 **시장리스크** 산출시 부도리스크도 0%를 적용한다. 현재 신용리스크와 달리 시장리스크 산출시에는 **공공기관도 RW 0.5~15%**가 적용되고 있는데, **실질 리스크**와 달리 **불합리하게 자본부담이 부과**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.

* 공공기관이 정부 결손보전 등을 받는 경우, 정부와 동일하게 RW 0% 적용(신·기보 등)
** 시장리스크 = 민감도리스크(금리·환율·주가 등) + 부도리스크 + 잔여리스크

③**서민금융진흥원**(이하 '서금원')을 보험업권 K-ICS 체계상 **적격 보증인으로 인정**하여 보증부대출에 **기존(8%)보다 낮은 위험계수(2.5%)를 적용**한다. 현행 K-ICS 체계상 서금원은 **신용등급이 없어 적격 보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데**, 서금원은 정부 출연을 받는 **공공기관**으로서 은행 등 **他 업권에서도 적격 보증인으로 인정**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.

아울러, ④은행의 **대안신용평가모형**을 여신심사에만 활용하지 않고, **규제모형*으로 승인**하여 **자본비율 산출 및 충당금 산정** 등에 **활용**한다. 현재 대안신용평가모형은 여신심사 시에만 활용(전략모형)되고 **자본비율 산출**(규제모형) 등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어, 정작 **자본비율 산출 시**에는 평균적으로 **실질부도율보다 높게 평가**됨에 따라 **자본부담이 증가**한다. 이에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하여 **대안신용평가모형의 규제모형 승인**을 **추진**한다. 은행은 **자본부담이 합리화****됨에 따라 **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중저신용자 대출**을 공급할 수 있고, 대안신용평가가 **여신심사에 더욱 내재화**되는 **기반**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규제모형 : 연체이력 등 신용정보 중심의 전통적 신용평가모형으로, 금감원 승인을 받아 여신심사뿐 아니라 자본비율 및 충당금 산출 등 건전성 관리 전반에 활용
** A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평균 RW가 기존 120%→80~100%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(잠정)

[❷ 포용금융을 위한 자산건전성 규제 합리화]

⑤**금융회사**(은행·보험·여전사·저축은행) **자체 채무조정 여신**(채무조정 시점 '요주의 여신'인 경우)에 대해 **6개월 이상 정상 상환**되는 경우, **'정상 여신'으로 분류**하도록 한다. 현재 **신용회복위원회** 프리워크아웃(요주의 여신 限)은 개시 후 **6개월 이상 정상 상환** 시 **정상 여신**으로 분류하는 데에 반해, 금융회사 **자체 채무조정** 여신은 **1년 이상 정상 상환**할 것을 **요구**하고 있어 **자체 채무조정의 유인을 낮출 수 있는 문제**를 **해소**한 것이다.

* 다만,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여신의 신용위험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등급상향 대상 여신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기준(예: 타 금융회사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)을 마련·운영

⑥**카드사**의 채권에 대해서는 **연체 이전**에 **자체 채무조정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**을 받은 경우 **연체 채권에서 제외**하고 **정상 채권**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. 현재 **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권**에 대해서도 **자체 채무조정** 등을 받은 경우 **연체채권 및 '요주의' 채권으로 분류**하도록 하고 있어, 카드사의 **사전 채무조정 유인**이 낮은 점을 고려하였다.

⑦**저축은행**의 **개인사업자 대출**에 대해 ▲현행 금융기관 **차입금**이 **연간매출액을 초과**할 것 외에 ▲요건추가 **최근 2년 연속 순손실**이 발생할 것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에 **'부실징후 예시'**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, **'요주의 여신'으로 분류**한다. 현실적으로 **저축은행**을 이용하는 **소상공인·자영업자**는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* **충당금 부담이 과도**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.

* 정상적인 경영환경에서도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측면(예: 일회성 시설투자로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)

[❸ 포용금융 지원 여력 확보를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]

금융권이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**충분한 자본여력이 뒷받침**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, 포용금융을 위한 금융권의 **지원여력 확보**를 위하여 **추가적인 자본규제 합리화 과제**를 시행한다.

⑧은행이 **보완자본**으로 인정되는 **후순위채**의 **자본인정액**을 **매년초 20%가 아닌 매분기 초에 5%씩 차감**할 수 있도록 한다. 현재 은행은 **보완자본**으로 인정되는 **후순위채**는 **잔존만기가 5년 이내인 경우 자본인정액을 매년초 20%씩 일괄 차감**하고 있는데, **매분기 초에 5%씩 차감**할 수 있음을 **해석상 명확히** 하여 은행의 **자본부담을 합리화**하는 것이다.

또한, ⑨은행이 **해외 집합투자증권** 익스포져에 **기초자산접근법***을 사용하여 **낮은 RW**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 이는 **해외 집합투자증권**은 기초자산 등에 대한 즉각적인 자료 입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초자산접근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**약정서기반접근법***으로 **높은 RW**를 적용하는 문제를 **해소**한 것이다**.

* (기초자산접근법) 펀드에 편입된 실제 기초자산별로 RW를 적용
(약정서기반접근법) 펀드의 약관 등에 따른 각 기초자산 편입한도별로 RW를 적용하되, 기초자산 중 높은 RW를 적용받는 자산부터 최대한 편입하는 것으로 가정

** 적시는 아니지만 은행이 최근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 허용
† 예: '26.3월말 은행 재무제표 작성시 '25년말~'26.2월말 기간 등 최근의 기초자산 등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, 이를 근거로 기초자산접근법 사용 가능

[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]

건전성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금융권의 **포용금융 자금공급 여력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**된다. 각 과제는 업권별 **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**의 **개정**(~'27.3월) 및 **해석**(~'27.1월) 등을 거쳐 **내년 1분기 내 시행**될 계획이다.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**추가 자금공급 여력**을 **포용금융에 충실히 공급**하는지 **모니터링**하고, **자본규제 합리화 과제** 등을 **지속적으로 발굴·검토**할 예정이다.

2 은행-저축은행 협업 포용 온렌딩 대출방안

[추진배경 및 주요내용]

은행이 저축은행과 협업하여 **중저신용자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**하는 **온렌딩 대출**을 추진한다. **저신용자**에 대한 **신용대출 잔액**이 **증가**하는 가운데, **금리도 하락**하고 있으나, 여전히 제2금융권 중신용자에서 **급격하게 금리가 높아지는 금리단층 구조***는 잔존하고 있다.

* 조달비용, 심사역량 차이 등으로 제2금융권 중금리 시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면서, 중신용자(은행: 6%대, 여전·저축은행 13~4%대)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

이에, 금리단층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**은행**과 **저축은행 협업**을 통해 **중저신용자 대상 금리**를 **대폭 인하**할 수 있는 **포용 온렌딩 대출**을 추진한다.

<신용도별 업권별 신용대출 금리('26.7월말, %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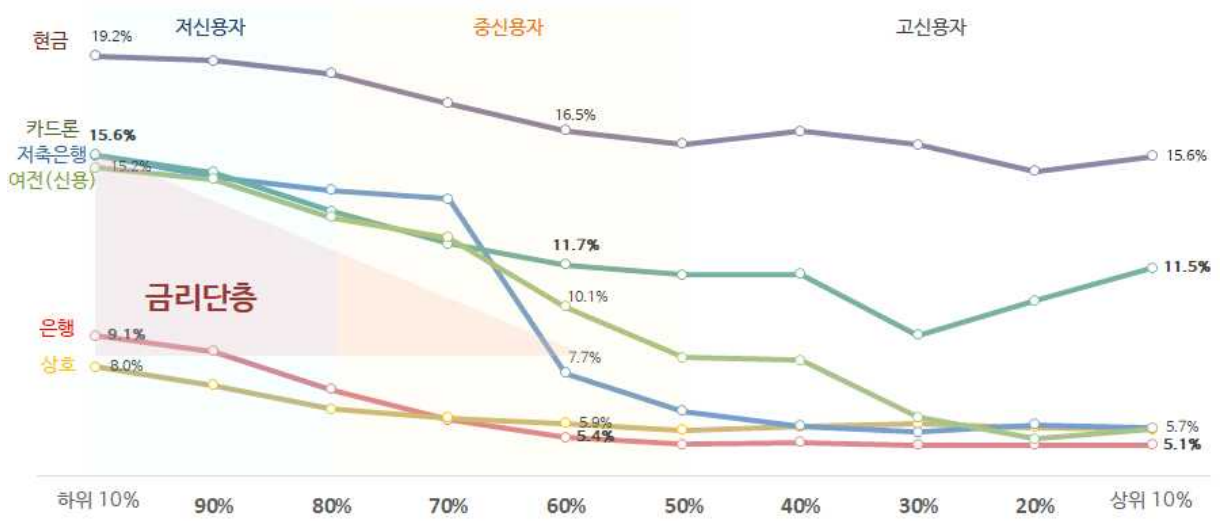

포용 온렌딩 대출은 **은행이 저축은행에 자금을 공급**하고, **저축은행**이 이를 재원으로 **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실행**하는 구조이다. **새희망홀씨 상품 지원대상*** 범위 내의 **중저신용자**에 공급하고, **금리**는 은행과 저축은행 간 **자율** 결정하되 **최종 대출금리는 평균 10% 내외**(평균)로 운용**할 계획이다.

* ❶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❷연소득 5천만원 이하 & 신용평점 하위 20%

** 다만,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 10%를 기준으로 조정(예: 0.5%p 상승시 10.5%로 조정)

은행은 **직접 중저신용자 대출을 시행하지 않고** 저축은행에 자금을 공급함에 따라 **대출 사후 관리비용**을 **절감**하고, **낮은 위험가중치**를 **적용**하여 **저리**로 저축은행에 **자금**을 **공급**할 수 있다. 저축은행은 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**자본원가, 법적비용(예보료), 업무원가 등 절감이 가능해**진다. 그 결과, **소비자는 최종적으로 기존 저축은행 대출보다 약 3~5%p의 금리를 절감**할 수 있을 것으로 **기대**된다.

[향후 추진일정]

금융위원회는 원활한 온렌딩 대출 공급을 위해 **기획형 규제 샌드박스**를 통해 은행-저축은행 간 **신용공여** 등과 관련된 **은행법** 및 **금융지주회사법** 등에 대하여 **규제특례***를 부여할 예정이다. 아울러, **은행**의 **온렌딩 대출 실적**은 **새희망홀씨 실적으로 인정**하고 신보·기보·지신보 등에 대한 **출연료 납부대상**에서 **제외**(규제 샌드박스)하는 등 온렌딩 대출 취급 은행·저축은행에 **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**할 계획이다.

* 인터넷은행의 경우 금융혁신법령 개정 후 즉시 추진

’26.11월말부터 규제특례를 받을 **사업자를 모집**하고, **’27년초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후 1분기 내**에 온렌딩 대출 상품을 **출시**할 예정이다.

3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적 공시

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**’26.2월 ‘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’** 발표 등을 통해 금융권의 회수 중심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개선해오고 있다. 그 **후속조치** 중 하나로 **’26년 상반기 은행·저축은행·상호금융**(새마을금고 제외)·**여전사**(카드·캐피탈)·**대부업체**(상위 30개사)의 금융회사별 **❶소멸시효 완성** 또는 소멸시효 도래 전 채권 소각, **❷자체 채무조정, ❸채권 매각** 실적을 **각 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**에 **최초로 공시**한다.

금융권은 **’26년 상반기** 중 **❶**개인 연체채권 **총 35.5만건, 1.6조원**을 **소멸시효 완성** 또는 **중도 소각**하였으며, 소멸시효 도래 전 소각 규모는 1.3조원(28.4만건, 82%(금액기준))이다. 같은 기간 **❷자체 채무조정**은 **총 34.1만건, 13.9조원**에 대해 이루어졌으며, **은행**(15.6만건)과 **여전사**(13.7만건)가 **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대부분**(86%)을 차지했다. 마지막으로, **❸채권매각**은 **개인연체채권 7.8조원(대출원금 잔액), 92.7만건**에 대하여 **3조 9,504억원에 매각**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번 실적공시는 그간 금융회사별로 산발적으로 관리되어 온 **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적을 체계적으로 집계·공개**하여 **금융회사의 책임**을 보다 **강화**하고, **채무자 보호와 재기지원** 중심의 개인연체채권 관리를 **금융현장에 정착**시켜 **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**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**반기별로 실적**을 공시하여 금융권의 기계적인 **소멸시효 연장을 개선**하고, **무책임하고 반복적인 연체채권 매각**이 아니라 연체 초기 **선제적인 자체 채무조정**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금융회사를 **관리·감**독해 나간다. 특히, 내년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**포용금융 종합평가**를 통해 **개인연체채권 관리 실적을 평가·환류**할 계획이다.

※ 붙임 : 1. 금융위원장 모두발언
2. (안건1)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
3. (안건2) 은행-저축은행 협업 포용 온렌딩 대출방안
4. (안건3)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적 공시안

담당부서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	신장수	(02-2100-2950)
		담당자	서기관	윤세열	(02-2100-2952)
			사무관	박성빈	(02-2100-2982)
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임형준	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이영민	(02-2100-2961)
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박진애	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권진웅	(02-2100-2991)
			사무관	정형준	(02-2100-2993)
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	책임자	과 장	오유정	(02-2100-2610)
		담당자	사무관	조의열	(02-2100-2612)
<공동>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정은정	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송명준	(02-3145-8030)
	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	책임자	국 장	황준하	(02-3145-8350)
		담당자	팀 장	김웅겸	(02-3145-8330)
			팀 장	안신원	(02-3145-8340)
	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	책임자	부 장	유형우	(02-3705-5917)
		담당자	팀 장	최재철	(02-3705-591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